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
------	-----

제출년월일 : 2005.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관련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므로 인해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 개정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관련 법률 명칭개정으로 인한 구문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안 제1조)
- 나.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 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별첨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 없음
- 라. 입 법 예 고 : 평창군공고 제2005-43호 (2005. 1. 31)
- 마. 기 타 : 해당 없음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p>
<p>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재산세 과표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무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생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현행과 같음)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關係法令拔萃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